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20호

2024. 2. 16.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597호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삼척시 조례 제1598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삼척시 조례 제1599호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삼척시 조례 제1600호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삼척시 조례 제1601호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 19
- 삼척시 조례 제1602호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삼척시 조례 제1603호 삼척시 치유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3
- 삼척시 조례 제1604호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7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34호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28

공 람									
--------	--	--	--	--	--	--	--	--	--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2월 16일

삼척시 조례 제1597호

###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캠핑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

니하는 경우 법 제23조의 규정"을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시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제7호"를 "법 제22조제1항제8호"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해해양경찰서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2월 16일

삼척시 조례 제1598호

###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들”을 “어르신들”로, “노인 목욕비”를 “어르신 목욕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을 “어르신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으로, “삼척시”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로, “80세 이상 노인”을 “7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전입”을 “전입”으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

되는 때”를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원한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목욕권은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2패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대상”을 “대상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신청 및 조사결정)”을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  
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민  
등록지 읍면동장”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시장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  
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차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한다”를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로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장·면장·동  
장에게 배부하고, 읍장·면장·동장은 배부받은 목욕권을 지원대상자  
에게 지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시기) 목욕권은 반기별로,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부터 지급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내에 소재하는”을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의 제목 “(요금정산 등)”을 “(목욕비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욕중앙회시지부장”이라 한다)과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목욕중앙회 시지부장”이라 한다)과 목욕권 사용에 관한 협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목욕중앙회시지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목욕비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붙여서”를 “목욕비를 청구하려는 목욕중앙회 시지부장 또는 목욕업소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욕비 청구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 목욕비를”로 한다.

제10조 중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을 “읍장·면장·동장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80세”를 “7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2월 16일

삼척시 조례 제1599호

###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관내”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척시 관할 구역에 있는”으로,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를 “보조하는 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삼척시”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로, “사업 (이하”를 “사업(이하”로, “각 호 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각급학교장”을 “각급학교의 장”으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을 “신청서를 제출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급학교”를 “시장은 각급학교”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삼척시”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 과장급이상”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과장급 이상”으로, “교육청”을 “삼척교육지원청”으로, “과장급 1명”을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

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의 회의에”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2월 16일

삼척시 조례 제1600호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연등 기타”를 “공연 등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체육활동”을 “체육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지”를 “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따라 체육지도자”로, “각 호에 규정된”을 “각 호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로, “고지”를 “공지”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행사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경우에는”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반환”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삼척종합 운동장	축구장	삼척시 동해대로 4234(교통)	천연잔디 1면
	육상트랙		8레인 우레탄
	테니스장		케미칼 2면
	족구장		인조잔디 3면
삼척체육관		삼척시 동해대로 4234-1(교통)	
도계공설 운동장	축구장	삼척시 도계읍 녹구1길 20-17(도계읍)	천연잔디 1면
	육상트랙		8레인 우레탄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삼척시 도계읍 녹구1길 38(도계읍)	인조잔디 1면
삼척복합 체육공원	축구장	삼척시 교통 산208번지 일원(교통)	인조잔디 2면
	야구장		인조잔디 1면
	풋살장		인조잔디 3면
	족구장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4면
	삼척시민 체육관	삼척시 뒷나루길 153(교통)	
	체력단련장		
	다목적실-1		221 m <sup>2</sup>

명 칭		위 치	비 고
테니스장	남양 시민테니스장	삼척시 남양동 325(남양동)	케미칼 7면
	도계테니스장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35-1(도계읍)	아크릴4면
	호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삼척시 삼척로 734(원덕읍)	천연잔디 1면
그라운드 골프장	삼척그라운드 골프장	삼척시 사직동261-11(남양동)	인조잔디 1면
	근덕그라운드 골프장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36(근덕면)	인조잔디 1면
국궁장	죽서정	삼척시 박결남로 873(남양동)	145m(5사대)
	해망정	삼척시 삼척로 381-1(원덕읍)	145m(5사대)
족구장	도계족구장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65(도계읍)	1면
야구장	도계흥전 야구연습장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52-4(도계읍)	마사토 인조잔디 1면
풋살장	진주풋살경기장	삼척시 남양동 176-1(남양동)	인조잔디 1면
	근덕풋살경기장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39-4(근덕면)	인조잔디 1면
	임원풋살경기장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45-4(원덕읍)	인조잔디 1면
	사직풋살경기장	삼척시 사직동 261-10(남양동)	전천후 인조잔디 1면
	도계풋살경기장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4(도계읍)	인조잔디 1면
자전거 교육장		삼척시 원당동 86-17(성내동)	113.88㎡
오십천 선양장		삼척시 정상동195-2(정상동)	일반철골
원덕복합체육회관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426-14(원덕읍)	
도계흥전체육공원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62-25(도계읍)	

명 칭		위 치	비 고
게이트물장	늑구게이트물장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46-2(도계읍)	인조잔디 1면
	도계게이트물장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4(도계읍)	인조잔디 1면
	고사게이트물장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80-5(도계읍)	인조잔디 1면
	호산게이트물장	삼척시 원덕읍 목원리20-40(원덕읍)	인조잔디 1면
	임원게이트물장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92-11(원덕읍)	인조잔디 1면
	교가게이트물장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361-19(근덕면)	인조잔디 6면
	광동게이트물장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58-2(하장면)	
	하월산게이트물장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203(노곡면)	인조잔디 1면
	하마늪게이트물장	삼척시 노곡면 하마늪리 143-1(노곡면)	인조잔디 2면
	중마늪게이트물장	삼척시 노곡면 중마늪리 102(노곡면)	인조잔디 1면
	하거노게이트물장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14-29(미로면)	인조잔디 2면
	하정게이트물장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69-1(미로면)	인조잔디 1면
	오저게이트물장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285-2(가곡면)	
	신기게이트물장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451(신기면)	인조잔디 1면
	사직동전천후 게이트물장	삼척시 사직동 264(남양동)	인조잔디 1면
	사직동게이트물장	삼척시 사직동 311-5(남양동)	인조잔디 1면
	사직동강변 게이트물장	삼척시 사직동 233(남양동)	인조잔디 1면
	오분게이트물장	삼척시 오분동 137(남양동)	인조잔디 2면
	남양게이트물장	삼척시 남양동 168-10(남양동)	인조잔디 2면
	당저게이트물장	삼척시 원당동 11(성내동)	인조잔디 1면
	성내게이트물장	삼척시 원당동 86-7(성내동)	인조잔디 1면
	교동게이트물장	삼척시 교동 243-13(교동)	인조잔디 1면
정리이사부공원 게이트물장	삼척시 정라동 41-282(정라동)	인조잔디 1면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칭	사용목적		기준시간	기본사용료		비고
				평일	휴일	
삼척종합운동장	체육경기	육상	4시간	40,000	60,000	*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축구		60,000	80,000	
	체육활동		70,000	100,000		
	일반행사		8시간	200,000	260,000	
도계공설운동장	체육경기	육상	4시간	20,000	30,000	
		축구		50,000	70,000	
	체육활동		60,000	80,000		
	일반행사		8시간	100,000	130,000	
도계보조경기장 (축구장)	체육경기		2시간	15,000	20,000	
	체육활동			15,000	20,000	
삼척체육관	체육경기		8시간	45,000	60,000	
	체육활동			75,000	100,000	
	일반행사			200,000	260,000	
삼척 복합 체육 공원	삼척시민 체육관	체육경기	8시간	60,000	80,000	
		체육활동		100,000	130,000	
		일반행사		300,000	390,000	
	축구장	체육경기	2시간	30,000	40,000	
		체육활동		30,000	40,000	
		일반행사		8시간	200,000	260,000
	야구장	체육경기	2시간	30,000	40,000	
		체육활동		30,000	40,000	
	풋살장	체육경기	2시간	15,000	20,000	
		체육활동		15,000	20,000	
	축구장 (다목적구 장)	체육경기	2시간	15,000	20,000	
		체육활동		15,000	20,000	
일반행사		8시간		80,000	100,000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li> <li>•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li> <li>•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li> </ul>					

##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칭		사용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단체	팀당, 1회 2시간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 체육동호인에 한함</li> <li>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li> </ul>								
삼척체육관		월간	주5일(월~금) 사용, 1일 1회 2시간	260,000									
삼척시민체육관				300,000									
삼척 시민 체육관	체력 단련장	어른	월회원, 1회 2시간	45,000	<table border="1"> <tr> <td>어린이</td> <td>7세 이상~12세 이하</td> </tr> <tr> <td>청소년</td> <td>13세 이상~18세 이하</td> </tr> <tr> <td>노인</td> <td>65세 이상</td> </tr> <tr> <td>군인</td> <td>「군인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3조(사용료의 감면)는 적용하지 아니함</li> </ul>	어린이	7세 이상~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18세 이하	노인	65세 이상	군인	「군인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	7세 이상~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18세 이하										
		노인	65세 이상										
		군인	「군인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자										
		개인, 1회 2시간	4,000										
	청소년 군인	월회원, 1회 2시간	35,000										
		개인, 1회 2시간	3,000										
	노인 어린이	월회원, 1회 2시간	30,000										
		개인, 1회 2시간	2,000										
시청 객장은동부	신청시간	무료											
대회-전지훈련 참가선수	1회 2시간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대회 제외</li> </ul>										
다목적실	단체	팀당, 1회 2시간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li> </ul>									

###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1시간당		10,000	
	방송시설	1일 / 1회		100,000	
	조명시설	1시간당		15,000	
도계보조경기장	조명시설	1시간당		6,000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전광판	1시간당		10,000	* 바닥매트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방송시설	1일 / 1회		100,000	
	바닥매트	1일 / 1회		50,000	
	조명시설	1시간당		2,000	
	빙난방시설	1시간당		3,500	
복합체육공원	조명시설	1시간당	축구장	6,000	
			야구장	8,000	
			풋살장/축구장	1,000	
상수도	수도요금	1일 / 입장객 500명 이하		20,000	* 체육시설 중 일반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1일 / 501~1,000명 이하		40,000	
		1일 / 1,001~5,000명 이하		60,000	
		1일 / 5,001~10,000명 이하		80,000	
		1일 / 10,001명 이상		100,000	

### 4. 상업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선전을 또는 광고를 게시	3.3㎡당 1개월	10,000	
	기타 선전광고	3.3㎡당 1개월	10,000	
	현수막	거당 1일	1,000	
	에드블론 및 유사게시를 광고	거당 1개월	20,000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2월 16일

삼척시 조례 제1601호

###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	
다. 들망어업	
라. 선인망어업	
마. 승망류어업	
바. 안강망어업	
사. 장망류어업	
아. 지인망어업	
자. 해선망어업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2월 16일

삼척시 조례 제1602호

###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삼척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득증대를 위하여"를 "수산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로 한다.

제6조 중 “삼척시”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로, “두고”를 “시에 두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삼척시”를 “시장은”으로, “사업비”를 “그 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삼척시 자체시책”을 “시 자체 시책”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을 “시장은 수산업의”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으로,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1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 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2월 16일

삼척시 조례 제1603호(의원 발의)

###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관 협력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연수·홍보사업
-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관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2월 16일

삼척시 조례 제1604호(의원 발의)

###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20만원으로하며”를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하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4-24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삼척시장

1. 목 적

침수위험 '나' 등급으로 지정된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주변에 상가 및 가옥이 산재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가 높아 '가' 등급으로 상향 변경하고 당초 사업지구만 포함된 지정면적에 침수범위를 포함하여 지정면적을 확대 함으로써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비고
		유형	등급	지정면적(㎡)	
후진	삼척시 교동 418번지 일번	침수위험	나	26.000	당초
후진	삼척시 교동 418번지 일번	침수위험	가	147.000	변경

3. 공고기간 : 2024. 2. 16. ~ 2024. 3. 3. (22일간)

4. 의견제출

가.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2. 16. ~ 2024. 3. 3.(22일간)

다.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라도 81(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

라. 문의처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 (☎033-570-3886)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며 만약 부득이하게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재해예방 대책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570-38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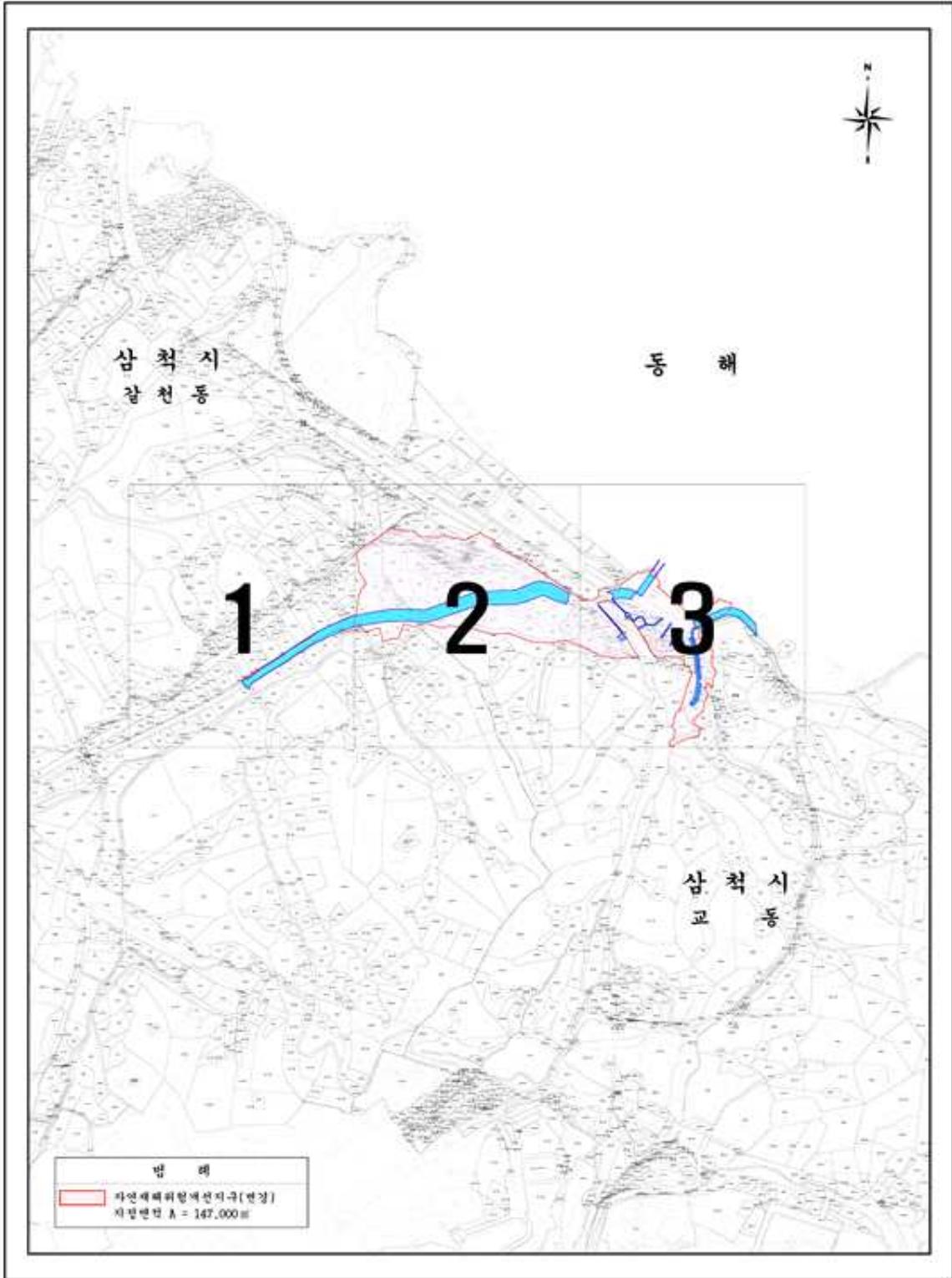
붙임 1. 일람도 1부.

2. 지형도면 고지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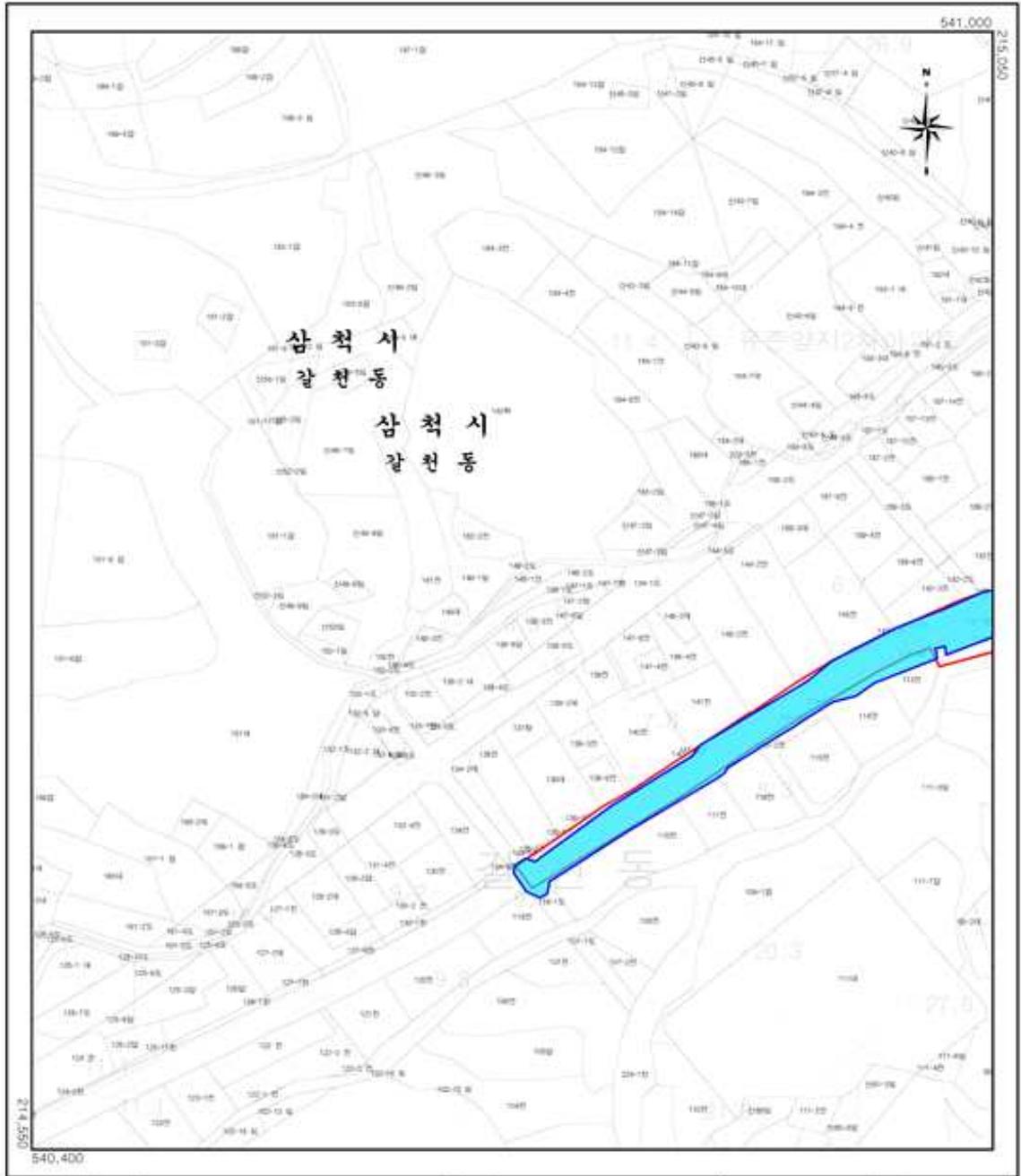
3. 의견제출서 1부. 끝.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람도

축척=1:4,000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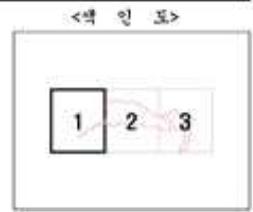
**<법령>**

행정구역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일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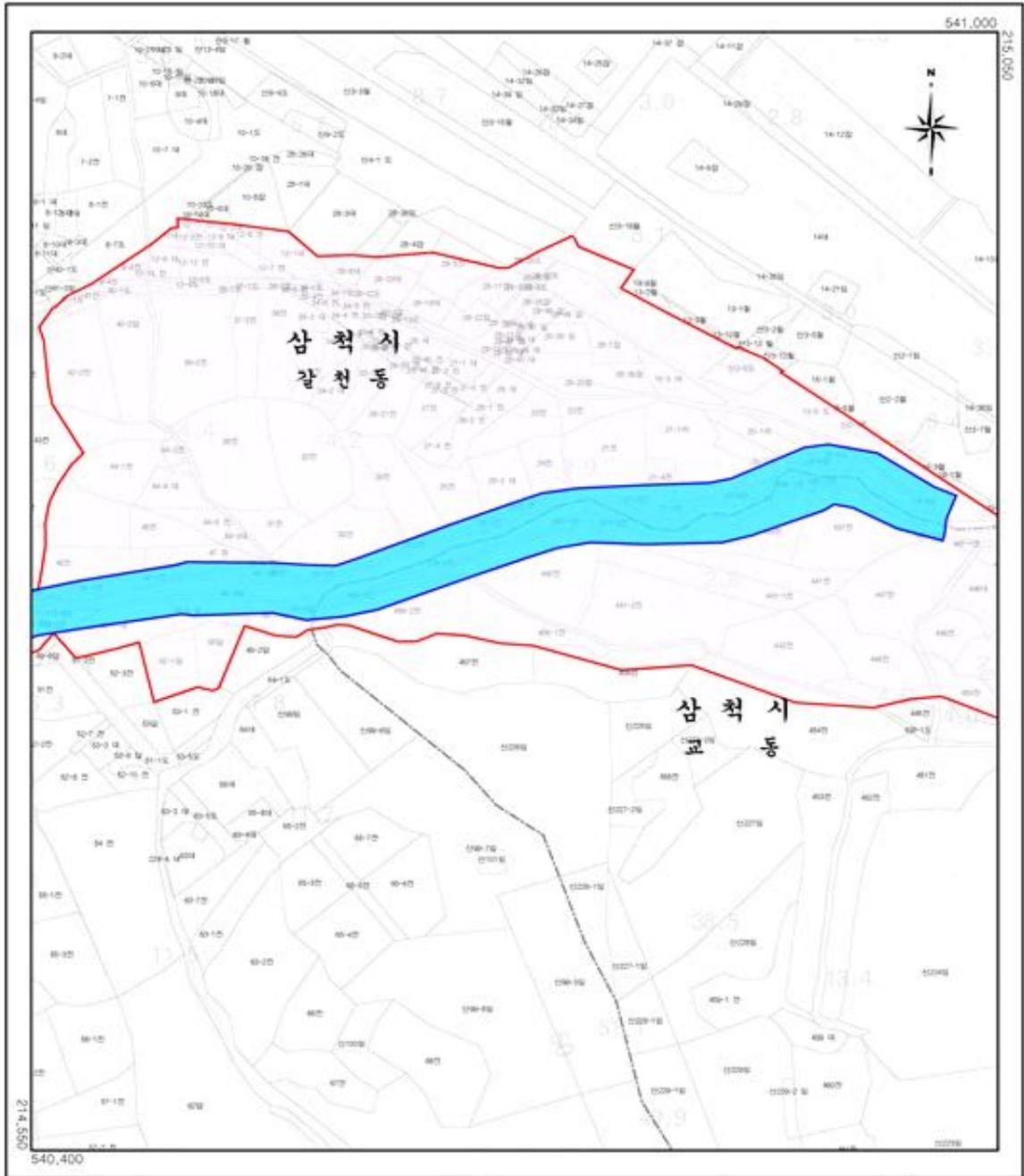
포지이윤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토이윤집모관리체계상 공개됨  
 확인일 : 2024년 1월 1일  
 확인자 :

축척 = 1:1,000

작성일자	삼척시장	작성일자	
고시번호		고시번호	
작성일자	(주)유신	작성일자	2024년 1월
작성일자	삼척시장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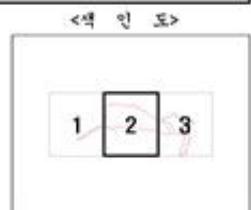
**<참 례>**

----- 행정구역선  
 [Blue shaded are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당초)  
 [Red outlined are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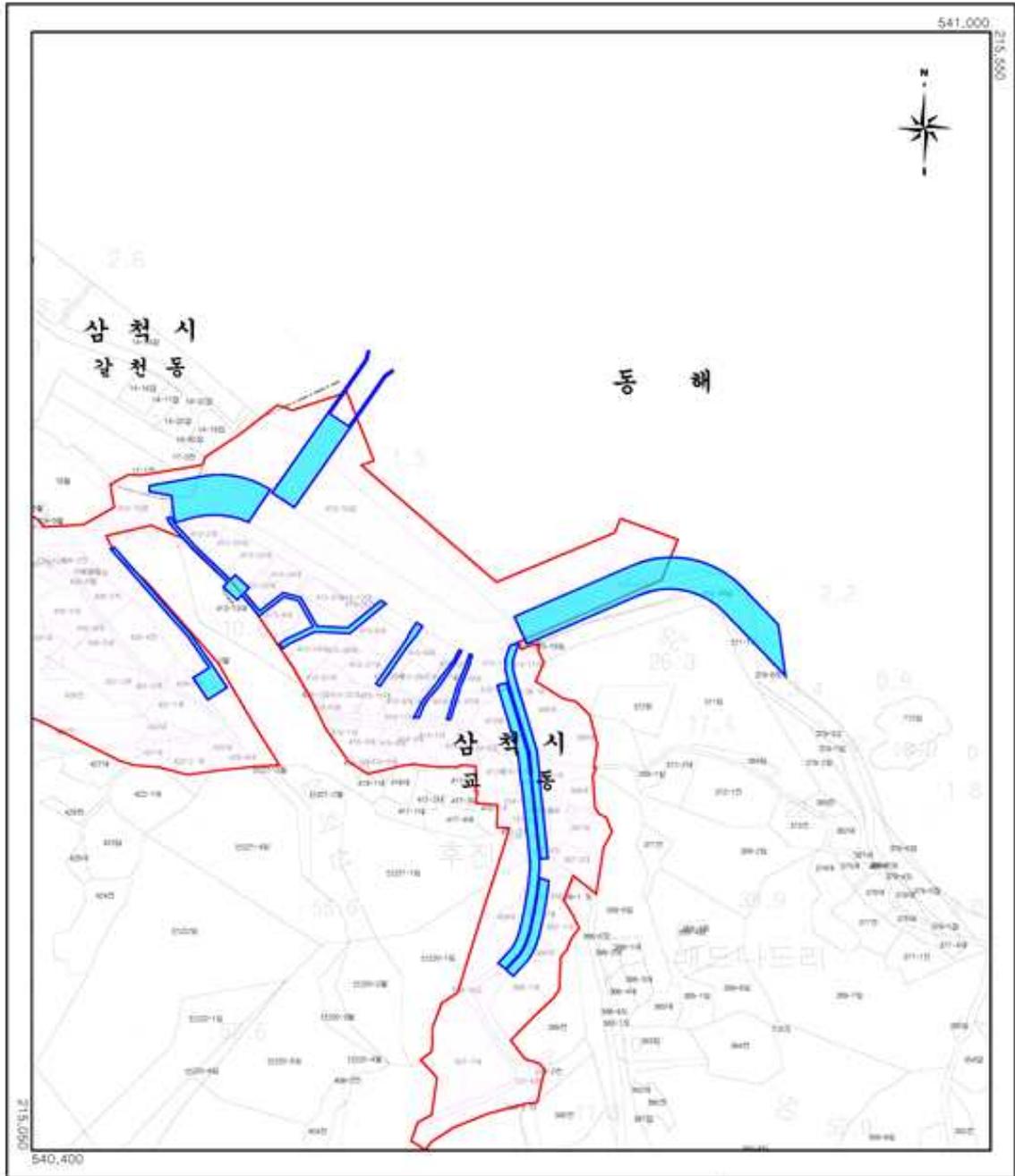
도시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관리체계상 등재됨  
 확인일 : 2024년 1월 1일  
 확인자 :

측 척 = 1:1,000

지정일자	삼척시장	지정일자	
고시번호		고시번호	
작성일자	(주)유선	작성일자	2024년 1월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	삼척시장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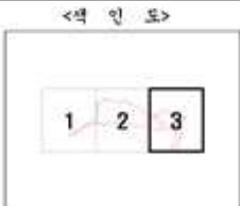
**<법령>**

..... 행정구역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일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선경)

도시이용규제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국토이용정보관리법제34조 제2항  
 확인일 : 2024년 1월 17일  
 확인자 :

측척 = 1:1,000

지정권자	삼척시장	지정일자	
고시년도		고시번호	
작성자	(주)유신	작성일자	2024년 1월
제작한 소유 및 발행자	삼척시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설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